

# 국내 석유류제품 가격조정

- 통상산업부 -

## 서울인상에 따른 가격조정(8.12)

통상산업부는 재경원에서 지난 8월 12일부터 휘발유·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적용함에 따라 등유 판매부과금을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고 국내 석유류 소비자가격도 같은날 0시부터 평균 5.17% 인상 조정된다고 발표하였다.

- 통상산업부에서 재경원의 교통세율 인상과 동시에 등유 판매 부과금을 인상한 것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등유 가격과의 격차가 축소되면 난방용유류의 수요가 경유에서 등유로 급속하게 이동하여 등유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
- 현재 등·경유 소비자가격차 유지를 위해 부과중인 1당 10원의 등유 판매부과금을 20원으로 인상하여 등·경유간 소비자 가격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.

- 이에 따라 1당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현행 574원에서 621원으로 8.19% 인상되고, 경유 소비자가격은 현행 227원에서 237원으로 4.41% 인상되며, 등유 소비자가격은 현행 241원에서 252원으로 4.56% 인상되었다.
- 이번 서울인상 및 등유 판매부과금 인상에 따라 생산자 물가는 0.227%p, 소비자 물가는 0.105%p 인상되게 되며, 등유 판매부과금의 인상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수입이 약 800억원 증가하게 되었다.

## 가스류등 가격조정 (8.1)

통상산업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석유류제품 및 가스의 공급 단계별 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.

- 휘발유·등유·경유·B-C유 등 유가연동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경우

- 지난 7월의 국제원유가격이 평균 16.53\$/B에서 15.24\$/B로 하락하였고, 이에 따라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가격도 평균 20.41\$/B에서 19.13\$/B로 내렸기 때문에
- 세전공장도가격은 평균 5.77%, 소비자가격은 평균 4.38% 하락하게 되었다.
- 한편 '94.1월 이후 고정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 LPG의 경우
  - 지난 해 10월 이후 110~120\$/T 수준이던 국제 LPG 가격이 '95.1월에는 158.89\$/T로 상승하였고 3월에는 217.75\$/T으로 거의 2배 정도로 인상되었으며,
  - 실제도입가격과 공급원가상의 기준도입가 (149.41\$/T)간의 차이가 확대되어 국내 LPG 수입사의 도입손실이 누적되는 등 LPG 가격인상 요인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.
  -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은 7.37% 인상하고,
  - 아울러 '95. 1~7월중 발생한 국내 LPG 수입사의 도입손실은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」의 유가원충 재원을 통해 보전하여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도록 하므로써 인상폭을 최소화하였다.
- 동시에 LNG 도매가격도 조정하게 되었다.
  - 이는 천연가스공급지역의 확대로 가스공급설비가 대폭확충되어 감가상각비가 크게 늘어나고, 가스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등 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으로서
  -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매가격을 평균 5.5% 인상 조정하고,
  - 각 시·도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스공사의 도매가격 인상조정율을 감안하여 각 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 가격을 조정토록 통보하였다.

주요 제품별·용도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.

- 석유제품의 유종별 소비자 가격은
    - 휘발유의 최고가는 리터당 585원에서 574원으로, 등유는 251원에서 241원으로, 저유황경유는 239원에서 227원으로, 저유황 B-C유는 129.10원에서 117.97원으로 각각 인하되었다.
  - LPG의 경우
    - 프로판 공장도가격은
      - 일반용의 경우 Kg당 230.7원에서 255.89원으로,
      - 도시가스용의 경우 Kg당 185.89원에서 211.46으로 인상조정
    - 프로판 최종소비자 가격은 Kg당 475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정
    - 부탄 대리점가격은 Kg당 304원에서 330원으로 인상조정함.
  - 천연가스의 경우
    - 주택에 공급되는 취사용 및 난방용 LNG 도매가격은  $m^3$ 당 각각 189.37원, 176.59원에서 191.66원으로 단일화하여 인상조정
    - LNG 수요가 난방용 위주로 증가하여 성수기(동절기)와 비수기(하절기)간 수요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완화하는 한편,
    - 하절기 냉방에 소요되는 전력을 가스로 대체하여 비수기의 LNG 수요를 개발하고 발전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
    - 일반난방용 LNG는  $m^3$  당 170.73원에서 179.54원으로 인상하고, 난방용 LNG는 141.92원에서 125.35원으로 대폭 인하하였다.
- 이와같은 석유류제품 및 가스가격조정에 따라 생산자물가는 0.204%P, 소비자물가는 0.016%P 직접 하락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. ☹